

힐스테이트 등촌역 입주자모집공고(정정)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4.11.25.(월) 공고한 “힐스테이트 등촌역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기존 38page) | 변경 후 (38page) |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되는 면적 및 창호면적, 가구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평형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당 현장은 거실 진공유리 적용으로 타현장 대비 고스펙 유리를 적용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되는 면적 및 창호면적, 가구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평형별로 금액이 상이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25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없음 | 1년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11.25.(월) | 2024.12.05.(목) | 2024.12.06.(금) | 2024.12.09.(월) | 2024.12.13.(금) | 2024.12.17.(화) ~ 2024.12.24.(화) | 2024.12.26.(목) ~ 2024.12.28.(토)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기관추천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 | | | (해외건설 근로자)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 | 필요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N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 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deungchon>)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준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 | O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O | | | X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25(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4.12.05.(목) | 2024.12.06.(금) | 2024.12.09.(월) | 2024.12.13.(금) | 2024.12.17.(화) ~ 2024.12.24.(화) | 2024.12.26.(목) ~ 2024.12.28.(토)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60)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전략과-2871호(2024.11.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5층, 12개동, 총 543세대(조합 238세대, 임대 26세대, 보류지 5세대) 중 일반분양 274세대
[특별공급 135세대(기관추천 27세대, 다자녀가구 27세대, 신혼부부 49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2024000688 | 01 | 059.5700A | 59A | 59.5700 | 20.2400 | 79.8100 | 64.4800 | 144.2900 | 40.2335 | 89 | 9 | 9 | 16 | 2 | 8 | 44 | 45 | 4 |
| | 02 | 059.5400B | 59B | 59.5400 | 20.7700 | 80.3100 | 64.4400 | 144.7500 | 40.2132 | 14 | 1 | 1 | 2 | 1 | 1 | 6 | 8 | 2 |
| | 03 | 084.9400A | 84A-1 | 84.9400 | 26.8000 | 111.7400 | 91.9400 | 203.6800 | 57.3683 | 89 | 9 | 9 | 16 | 2 | 8 | 44 | 45 | 23 |
| | | | 84A-2 | 84.9400 | 26.8000 | 111.7400 | 91.9300 | 203.6800 | | | | | | | | | | |
| | 04 | 084.7100B | 84B-1 | 84.7100 | 27.2200 | 111.9300 | 91.6900 | 203.6200 | 57.2130 | 29 | 3 | 3 | 5 | 1 | 2 | 14 | 15 | 2 |
| | | | 84B-2 | 84.7100 | 27.2200 | 111.9300 | 91.6900 | 203.6200 | | | | | | | | | | |
| | 05 | 084.9800C | 84C-1 | 84.9800 | 27.4000 | 112.3800 | 91.9700 | 204.3500 | 57.3953 | 53 | 5 | 5 | 10 | 2 | 5 | 27 | 26 | 5 |
| | | | 84C-2 | 84.9800 | 27.4000 | 112.3800 | 91.9700 | 204.3500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74 | 27 | 27 | 49 | 8 | 24 | 135 | 139 | 36 |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변화형 계획에 따라 발코니 설치 위치가 상이함에 따라 확장 시 침실2, 3의 크기가 동별/층별 상이한 주택형(084.9400A, 084.7100B, 084.9800C)의 경우 특정타입(84A-1, 84A-2, 84B-1, 84B-2, 84C-1, 84C-2)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전용, 공급, 계약면적은 모두 동일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 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 59A | 59B | 84A | 84B | 84C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2 | - | 2 | - | 1 | 5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1 | - | 1 | 3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 - | 3 | - | 1 | 6 | |
| | 장애인 | 서울특별시 | 1 | - | 1 | - | - | 2 |
| | | 경기도 | - | - | - | - | 1 | 1 |
| | | 인천광역시 | - | - | - | 1 | - | 1 |
| | 중소기업 근로자 | 2 | - | 2 | 2 | 1 | 7 | |
| | 해외건설 근로자 | 1 | 1 | - | - | - | - | 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50%) | 5 | 1 | 5 | 2 | 3 | 16 | |
| | 인천광역시, 경기도(50%) | 4 | - | 4 | 1 | 2 | 11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16 | 2 | 16 | 5 | 10 | 49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1 | 2 | 1 | 2 | 8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8 | 1 | 8 | 2 | 5 | 24 |
| 합 계 | | | 44 | 6 | 44 | 14 | 27 | 13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VAT 포함]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수 | 동호 구분 | 총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 가치세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 | | | 2025.04.17 | 2025.06.17 | 2025.09.17 | 2025.12.17 | 2026.03.17 | 2026.06.17 | | |
| 59A | 89 | 102동 1,3,4,5호 104동 1,3,4,5호 105동 1,2호 110동 1,2,3,4호 111동 1,2,3,4호 | 1층 | 1 | 622,800,000 | 415,200,000 | - | 1,038,000,000 | 103,800,000 | 103,800,000 | 103,800,000 | 103,800,000 | 103,800,000 | 103,800,000 | 103,800,000 | 311,400,000 |
| | | | 2층 | 6 | 636,600,000 | 424,400,000 | - | 1,061,000,000 | 106,100,000 | 106,100,000 | 106,100,000 | 106,100,000 | 106,100,000 | 106,100,000 | 106,100,000 | 318,300,000 |
| | | | 3층 | 16 | 650,400,000 | 433,600,000 | - | 1,084,000,000 | 108,400,000 | 108,400,000 | 108,400,000 | 108,400,000 | 108,400,000 | 108,400,000 | 108,400,000 | 325,200,000 |
| | | | 4층 | 15 | 663,600,000 | 442,400,000 | - | 1,106,000,000 | 110,600,000 | 110,600,000 | 110,600,000 | 110,600,000 | 110,600,000 | 110,600,000 | 110,600,000 | 331,800,000 |
| | | | 5층 | 8 | 670,200,000 | 446,800,000 | - | 1,117,000,000 | 111,700,000 | 111,700,000 | 111,700,000 | 111,700,000 | 111,700,000 | 111,700,000 | 111,700,000 | 335,100,000 |
| | | | 6-10층 | 21 | 677,400,000 | 451,600,000 | - | 1,129,000,000 | 112,900,000 | 112,900,000 | 112,900,000 | 112,900,000 | 112,900,000 | 112,900,000 | 112,900,000 | 338,700,000 |
| | | | 11층 이상 | 22 | 684,000,000 | 456,000,000 | - | 1,140,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114,000,000 | 342,000,000 |

| | | | | | | | | | | | | | | | | |
|-----|----|--|--------|----|-------------|-------------|---|---------------|-------------|-------------|-------------|-------------|-------------|-------------|-------------|-------------|
| 59B | 14 | 102동 2호 104동 2호 | 1층 | 2 | 620,400,000 | 413,600,000 | - | 1,034,000,000 | 103,400,000 | 103,400,000 | 103,400,000 | 103,400,000 | 103,400,000 | 103,400,000 | 103,400,000 | 310,200,000 |
| | | | 2층 | 2 | 634,200,000 | 422,800,000 | - | 1,057,000,000 | 105,700,000 | 105,700,000 | 105,700,000 | 105,700,000 | 105,700,000 | 105,700,000 | 105,700,000 | 317,100,000 |
| | | | 3층 | 2 | 647,400,000 | 431,600,000 | - | 1,079,0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107,900,000 | 323,700,000 |
| | | | 4층 | 2 | 661,200,000 | 440,800,000 | - | 1,102,000,000 | 110,200,000 | 110,200,000 | 110,200,000 | 110,200,000 | 110,200,000 | 110,200,000 | 110,200,000 | 330,600,000 |
| | | | 5층 | 2 | 667,800,000 | 445,200,000 | - | 1,113,000,000 | 111,300,000 | 111,300,000 | 111,300,000 | 111,300,000 | 111,300,000 | 111,300,000 | 111,300,000 | 333,900,000 |
| | | | 6-10층 | 4 | 674,400,000 | 449,600,000 | - | 1,124,000,000 | 112,400,000 | 112,400,000 | 112,400,000 | 112,400,000 | 112,400,000 | 112,400,000 | 112,400,000 | 337,200,000 |
| 84A | 89 | 101동 1,2,3,4호 103동 1,2,3,4호 106동 1,2,3,4호 107동 1,2,3,4호 108동 1,2,3,4호 109동 1,2,3호 | 1층 | 20 | 793,200,000 | 528,800,000 | - | 1,322,000,000 | 132,200,000 | 132,200,000 | 132,200,000 | 132,200,000 | 132,200,000 | 132,200,000 | 132,200,000 | 396,600,000 |
| | | | 2층 | 23 | 810,000,000 | 540,000,000 | - | 1,350,000,000 | 135,000,000 | 135,000,000 | 135,000,000 | 135,000,000 | 135,000,000 | 135,000,000 | 135,000,000 | 405,000,000 |
| | | | 3층 | 23 | 827,400,000 | 551,600,000 | - | 1,379,000,000 | 137,900,000 | 137,900,000 | 137,900,000 | 137,900,000 | 137,900,000 | 137,900,000 | 137,900,000 | 413,700,000 |
| | | | 4층 | 22 | 844,800,000 | 563,200,000 | - | 1,408,000,000 | 140,800,000 | 140,800,000 | 140,800,000 | 140,800,000 | 140,800,000 | 140,800,000 | 140,800,000 | 422,400,000 |
| | | | 5층 | 1 | 853,200,000 | 568,800,000 | - | 1,422,000,000 | 142,200,000 | 142,200,000 | 142,200,000 | 142,200,000 | 142,200,000 | 142,200,000 | 142,200,000 | 426,600,000 |
| | | | 6-10층 | 10 | 863,400,000 | 575,600,000 | - | 1,439,0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431,700,000 |
| 84B | 29 | 112동 1,4호 | 1층 | 1 | 794,400,000 | 529,600,000 | - | 1,324,000,000 | 132,400,000 | 132,400,000 | 132,400,000 | 132,400,000 | 132,400,000 | 132,400,000 | 132,400,000 | 397,200,000 |
| | | | 2층 | 2 | 811,800,000 | 541,200,000 | - | 1,353,000,000 | 135,300,000 | 135,300,000 | 135,300,000 | 135,300,000 | 135,300,000 | 135,300,000 | 135,300,000 | 405,900,000 |
| | | | 3층 | 2 | 829,200,000 | 552,800,000 | - | 1,382,000,000 | 138,200,000 | 138,200,000 | 138,200,000 | 138,200,000 | 138,200,000 | 138,200,000 | 138,200,000 | 414,600,000 |
| | | | 4층 | 2 | 846,000,000 | 564,000,000 | - | 1,410,000,000 | 141,000,000 | 141,000,000 | 141,000,000 | 141,000,000 | 141,000,000 | 141,000,000 | 141,000,000 | 423,000,000 |
| | | | 5층 | 2 | 855,000,000 | 570,000,000 | - | 1,425,000,000 | 142,500,000 | 142,500,000 | 142,500,000 | 142,500,000 | 142,500,000 | 142,500,000 | 142,500,000 | 427,500,000 |
| | | | 6-10층 | 10 | 863,400,000 | 575,600,000 | - | 1,439,0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143,900,000 | 431,700,000 |
| | | | 11층 이상 | 10 | 872,400,000 | 581,600,000 | - | 1,454,000,000 | 145,400,000 | 145,400,000 | 145,400,000 | 145,400,000 | 145,400,000 | 145,400,000 | 145,400,000 | 436,200,000 |
| 84C | 53 | 105동 3,4호 109동 4호 112동 2,3호 | 1층 | 4 | 789,600,000 | 526,400,000 | - | 1,316,000,000 | 131,600,000 | 131,600,000 | 131,600,000 | 131,600,000 | 131,600,000 | 131,600,000 | 131,600,000 | 394,800,000 |
| | | | 2층 | 5 | 807,000,000 | 538,000,000 | - | 1,345,000,000 | 134,500,000 | 134,500,000 | 134,500,000 | 134,500,000 | 134,500,000 | 134,500,000 | 134,500,000 | 403,500,000 |
| | | | 3층 | 5 | 823,800,000 | 549,200,000 | - | 1,373,000,000 | 137,300,000 | 137,300,000 | 137,300,000 | 137,300,000 | 137,300,000 | 137,300,000 | 137,300,000 | 411,900,000 |
| | | | 4층 | 5 | 841,200,000 | 560,800,000 | - | 1,402,000,000 | 140,200,000 | 140,200,000 | 140,200,000 | 140,200,000 | 140,200,000 | 140,200,000 | 140,200,000 | 420,600,000 |
| | | | 5층 | 5 | 849,600,000 | 566,400,000 | - | 1,416,000,000 | 141,600,000 | 141,600,000 | 141,600,000 | 141,600,000 | 141,600,000 | 141,600,000 | 141,600,000 | 424,800,000 |
| | | | 6-10층 | 17 | 858,000,000 | 572,000,000 | - | 1,430,000,000 | 143,000,000 | 143,000,000 | 143,000,000 | 143,000,000 | 143,000,000 | 143,000,000 | 143,000,000 | 429,000,000 |
| | | | 11층 이상 | 12 | 867,000,000 | 578,000,000 | - | 1,445,000,000 | 144,500,000 | 144,500,000 | 144,500,000 | 144,500,000 | 144,500,000 | 144,500,000 | 144,500,000 | 433,5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밸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밸코니 확장 계약시 밸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2">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 rowspan="3">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 | | 구분 | 처리방법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 | | | | | | | | | | | | | | | | | | |
| |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 해외건설 근로자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신 분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근로자 :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 | | |
| 배점항목 |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계 | | 100 | | |
| 미성년 자녀수(1) | | 40 | 4명 이상 | 40 |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 | | |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49세대

| 구분 | 내용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 |
| 당첨자 선정방법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 colspan="3">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 colspan="3">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 colspan="3">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tr> </tbody> </table> | | |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head> <tbody> <tr> <td>2024. 11. 25.(월)</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body> </table>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4. 11. 25.(월)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 11. 25.(월)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 <tr> <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td>100% 이하</td><td>~7,004,509원</td><td>~8,248,467원</td><td>~8,775,071원</td><td>~9,563,282원</td><td>~10,351,493원</td><td>~11,139,704원</td></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00% 초과 120% 이하</td><td>~8,405,411원</td><td>~9,898,160원</td><td>~10,530,085원</td><td>~11,475,938원</td><td>~12,421,792원</td><td>~13,367,645원</td></tr> <tr> <td rowspan="2">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td>100% 초과 140% 이하</td><td>7,004,510원~ 9,806,313원</td><td>8,248,468원~ 11,547,854원</td><td>8,775,072원~ 12,285,099원</td><td>9,563,283원~ 13,388,595원</td><td>10,351,494원~ 14,492,090원</td><td>11,139,705원~ 15,595,586원</td></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20% 초과 160% 이하</td><td>8,405,412원~ 11,207,214원</td><td>9,898,161원~ 13,197,547원</td><td>10,530,086원~ 14,040,114원</td><td>11,475,939원~ 15,301,251원</td><td>12,421,793원~ 16,562,389원</td><td>13,367,646원~ 17,823,526원</td></tr> </tbody> </table> | | |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td><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td><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9">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p>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4. 11. 25.(월)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17,823,526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밀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월천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건축물 종류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 | | 단독주택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주택 외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 |
| | | |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 |
| | | |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
| | | |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

| | <p>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 | | | |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 | | | | | | | | | |
|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단계 | 비율 | 내용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단계 | 비율 | 내용 | | | | | | | | | |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 | | | | | | | |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 | | | | | | | | |
| 비고 |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본인 신청 시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 |
|--------------|---|
| 공고단지 청약연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13.(금) ~ 2024.12.22(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12.1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구분 | 기간 | 서류 제출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 24.12.17.(화)~24.12.24.(화) 10:00 ~ 16:30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문예약제 - 당사 홈페이지 (https://hillstate.co.kr/s/deungchon) |
| 예비입주자 (예비 순번 앞순위 우선) | 제출 대상 세대 별도 안내 예정 | | |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deungchon>)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이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input type="radio"/>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 | <input type="radio"/> | | 서약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input type="radio"/>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 | <input type="radio"/>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외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외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input type="radio"/> | 복무확인서 |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
| | <input type="radi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가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input type="radio"/> | |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다자녀 특별공급 | ○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소득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직계비속 |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 | <input type="radi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 | <input type="radio"/> | | | 피부양 직계비속 |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input type="radio"/> | |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input type="radio"/>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 본인 | - |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 | <input type="radi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배우자 | - | •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input type="radi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input type="radi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input type="radi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input type="radio"/>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 | | | | |
|------------------|-----------------------|--------------------|----------|---|
| | <input type="radio"/>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input type="radio"/> | 인감증명서 | 당첨자 |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input type="radio"/> | 인감도장 | 당첨자 | |
| | <input type="radio"/> | 위임장 | 당첨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input type="radi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input type="radi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input type="radio"/>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문계산서 등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5.)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 자료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 ①,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①,② 해당 직장 |
|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②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의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 | | |
|--------------|--------|---|--------------------------------------|
| | 법인 대표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① 행정복지센터 |
| 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① 접수장소 (견본주택)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구분 | 확인자격 | 증빙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 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추가 (해당자) | 농지법 및 조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input type="radio"/> | | 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개인정보활용등의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input type="radio"/> | |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 | <input type="radio"/>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등분(전체 포함)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외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외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input type="radi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 | <input type="radio"/> | |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p>※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p> |

| | | | | |
|---------------------------|---|-----------------------|-------------|---|
| | | | |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
|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가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 인감증명서 | 당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인감도장 | 당첨자 | |
| | ○ | 위임장 | 당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5)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증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12.26.(목) ~ 2024.12.28(토) 10:00 ~ 16: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60)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input type="radio"/>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input type="radio"/> | 신분증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input type="radio"/> | 인감도장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input type="radio"/>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수입인지(인지세)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인지 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 밸코니확장 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각각 100%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input type="radi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제3자 대리인 | <input type="radio"/> | 인감증명서 | 당첨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 |
|-----------------------|-----------------------|--------------------|-------|---|
| 신청시 추가서류 | <input type="radio"/> | 인감도장 | 당첨자 | |
| | <input type="radio"/> | 위임장 | 당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input type="radio"/>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input type="radi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input type="radi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흠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5621-6598-290859 | 등촌1구역재건축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40-014-303887 예금주: 등촌1구역재건축)로 관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로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협약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발생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들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은)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계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 1, 실내골프연습장 1, 주민카페 1, 작은도서관 1, 어린이집 1, 경로당 1, 관리사무소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 3층 |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7m |
| 지하 2, 4, 5층 |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3m |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등급 | 최대응답가속도 | 메르칼리 진도 등급 |
|------|---------|------------|
| I | 0.204g | VII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건축/ 토목 / 기계 | 소방 / 정보통신 | 전기 |
|------|---------------|-------------|-------------|
| 회사명 |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 아이비엔지니어링 | 팸코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3,793,488,600 | 566,500,000 | 547,649,000 |

■ 시행자 및 시공회사

| 구분 | 시행자 | 시공회사명 |
|---------|------------------------------|----------------------|
| 상호명 | 등촌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현대건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219, 201호(등촌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 법인등록 번호 | 254271-0006223 | 110111-0007909 |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01212024-101-0005400 | ₩246,345,4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체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체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체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체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자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 단열 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고효율 변압기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 주택형 (약식 표기) | 확장금액 | 계약금(10%) | 증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공급가액 | 계약 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59A | 10,150,000 | 1,015,000 | 1,015,000 | 8,120,000 | |
| 59B | 10,900,000 | 1,090,000 | 1,090,000 | 8,720,000 | |
| 84A | 13,310,000 | 1,331,000 | 1,331,000 | 10,648,000 | |
| 84B | 12,220,000 | 1,222,000 | 1,222,000 | 9,776,000 | |
| 84C | 14,200,000 | 1,420,000 | 1,420,000 | 11,360,000 | |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되는 면적 및 창호면적, 가구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평형별로 금액이 상이함.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펜트타입 하부세대는 거실 천장 내 상부세대 배수/우수배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일부)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의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 위탁자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릴에 환기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함.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 위탁자와 무관함.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5621-6598-294051 | 현대건설(주)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304117,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부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 0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무상옵션)

| 품목 | 적용실 | 타입 | 기본 | 선택 | |
|--------------|-----------|---------------|-------------|----------------|-----------|
| 주방가구 도어마감 칼라 | 주방 | 전타입 | BeigeGarden | EuropeanForest | 7PMSunset |
| 욕실 1 선택제 | 욕실 1 | 전타입 | 욕조형 | 샤워부스형 | |
| 파우더장 | 침실 1 드레스룸 | 84A, 84B, 84C | 입식 | 좌식 | |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 시스템에어컨 | 부분 설치 |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전실 설치 | 침실1, 거실 _ 2개소 | 59 전타입 | 3,850,000 | 385,000 | 385,000 | 3,080,000 |
| | | 침실1, 거실, 주방 _ 3개소 | 84 전타입 | 5,610,000 | 561,000 | 561,000 | 4,488,000 |
| | 전실 설치 |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_ 4개소 | 59 전타입 | 7,150,000 | 715,000 | 715,000 | 5,720,000 |
| | |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_ 5개소 | 84 전타입 | 9,350,000 | 935,000 | 935,000 | 7,480,000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해지)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세대에 대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는 냉매매립배관 2개소 (거실 스텐드형, 침실1 벽걸이형)가 기본 제공되며 평형별 시설물(냉매배관, 배수배관, 콘센트 등) 위치를 사전 확인하고 에어컨 구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2개소(콘센트 포함)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스텐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시 홈넷, 온도조절기와 연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등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시공여건에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전설의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LG전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등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VAT 포함]

|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삼성 비스포크 | 전타입 | 5,960,000 | 596,000 | 596,000 | 4,768,000 (냉장) RR40C7995AP(우) / RR40C7895AP(좌) (냉동) RZ34C7965AP(우) / RZ34C7865AP(좌) (김치냉장고) RQ34C7945AP(우) / RQ34C7845AP(좌) _ 코타화이트 |
| | LG 오브제 | 전타입 | 6,080,000 | 608,000 | 608,000 | 4,864,000 (냉장) BC1L2AA (냉동) BC1F2AA (김치냉장고) BC1K3AA _ 미스트베이지 |
|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_ DW60T7065SS | 전타입 | 850,000 | 85,000 | 85,000 | 680,000 |
| 인덕션 쿡탑 3구 인덕션 (삼성전자-NZ63DB553CFT) |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_ GRA-BI322H) | 전타입 | 880,000 | 88,000 | 88,000 | 704,000 |
| | | | 1,450,000 | 145,000 | 145,000 | 1,160,000 |
| 기능성 오븐 | 삼성전자 _ NQ36A6555CK | 전타입 | 320,000 | 32,000 | 32,000 | 256,000 |

3) 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주방가구 | 주방가구 고급화(놀테) | 59A | 17,000,000 | 1,700,000 | 1,700,000 | 13,600,000 |
| | | 59B | 14,600,000 | 1,460,000 | 1,460,000 | 11,680,000 |
| | | 84A | 19,300,000 | 1,930,000 | 1,930,000 | 15,440,000 |
| | | 84B | 18,500,000 | 1,850,000 | 1,850,000 | 14,800,000 |
| | | 84C | 17,700,000 | 1,770,000 | 1,770,000 | 14,160,000 |
|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 59A | 18,640,000 | 1,864,000 | 1,864,000 | 14,912,000 거실, 주방, 복도 포세린타일 포함 냉장고 옵션에 따라 상판 길이 달라질 수 있음 |
| 반침장 | 침실1 불박이장 (슬라이딩도어+ 일반가구 반침장) | 59A | 2,100,000 | 210,000 | 210,000 | 1,680,000 |
| | | 59B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 84A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 | | 84B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 | | 84C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 | 침실3 반침장 (일반가구 반침장) | 59A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 | 59B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ドレス룸 고급화 | 84 전타입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 드레스룸 글라스 도어 + 캡 헌지 | 84 전타입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4) 바닥마감재

[단위 : 원, VAT 포함]

| |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바닥재 고급화 | 헤링본 강마루(전실) | 59A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기본 : 강마루 ※ 59A타입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선택 시 퍼니처 옵션 선택 시 헤링본 강마루 (전실) 또는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 (거실,복도,주방) 옵션 선택 불가 |
| |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선택 시 | | 400,000 | 40,000 | 40,000 | 320,000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59B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 |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84A | 헤링본 강마루(전실) | 84A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기본 : 강마루 ※ 84A타입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옵션 선택 시 헤링본 강마루 (전실) 또는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 (거실,복도,주방) 옵션 선택 불가 |
| |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3,600,000 | 360,000 | 360,000 | 2,880,000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84B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3,500,000 | 350,000 | 350,000 | 2,800,000 | |
| 84C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84B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 | 헤링본 강마루(전실) |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3,700,000 | 370,000 | 370,000 | 2,960,000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84C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
| | 헤링본 강마루(침실) + 포세린타일(거실,복도,주방) |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

5) 현관

[단위 : 원, VAT 포함]

| |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현관중문 | 수동형 | 3연동슬라이딩도어 + 은경/가구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59A | 2,320,000 | 232,000 | 232,000 | 1,856,000 |
| | | 3연동슬라이딩도어 + 은경/가구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복도장식장 | 59B | 4,280,000 | 428,000 | 428,000 | 3,424,000 |
| | | 3연동슬라이딩도어 + 신발장 하부조명 | 84 전타입 | 1,690,000 | 169,000 | 169,000 | 1,352,000 |
| | 자동형 | 3연동슬라이딩도어 + 은경/가구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59A | 3,470,000 | 347,000 | 347,000 | 2,776,000 |
| | | 3연동슬라이딩도어 + 은경/가구판넬 + 신발장 하부조명 + 복도장식장 | 59B | 5,430,000 | 543,000 | 543,000 | 4,344,000 |
| | | 3연동슬라이딩도어 + 신발장 하부조명 | 84 전타입 | 2,840,000 | 284,000 | 284,000 | 2,272,000 |

6) 욕실

[단위 : 원, VAT 포함]

| | 품목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욕실 고급화 | 욕실 1 고급화(욕조형) :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타일+바닥 중국산 타일)+하부장 일체형 세면대 & 욕실 2 고급화(샤워부스형) :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타일+바닥 중국산 타일)+하부장 일체형 세면대+브라운 도금 샤워부스 프레임 | 59 전타입 | 3,600,000 | 360,000 | 360,000 | 2,880,000 | |
| | | 84A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 | | 84B, 84C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 | 욕실 1 고급화(샤워부스형) :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타일+바닥 중국산 타일)+하부장 일체형 세면대+브라운 도금 샤워부스 프레임 & 욕실 2 고급화(샤워부스형)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타일+바닥 중국산 타일)+하부장 일체형 세면대+브라운 도금 샤워부스 프레임 | 59 전타입 | 3,600,000 | 360,000 | 360,000 | 2,880,000 | |
| | | 84A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 | | 84B, 84C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 품목 |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종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5.02.17 | 입주지정일 | |
| 주방 벽체 /상판 | 주방 벽체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_캔스톤) | 59A | 8,100,000 | 810,000 | 810,000 | 6,480,000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미선택 시 |
| | | | 5,100,000 | 510,000 | 510,000 | 4,080,000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선택 시 |
| | | 59B | 8,000,000 | 800,000 | 800,000 | 6,400,000 | |
| | | 84A | 8,600,000 | 860,000 | 860,000 | 6,880,000 | |
| | | 84B | 8,800,000 | 880,000 | 880,000 | 7,040,000 | |
| | 주방 벽체 + 상판 (세라믹타일) | 84C | 8,900,000 | 890,000 | 890,000 | 7,120,000 | |
| | | | 4,100,000 | 410,000 | 410,000 | 3,280,000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미선택 시 |
| | | 59A | 2,700,000 | 270,000 | 270,000 | 2,160,000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선택 시 |
| | | 59B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 | | 84A | 4,300,000 | 430,000 | 430,000 | 3,440,000 | |
| 주방 벽체 |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_쿼츠) | 84B | 4,400,000 | 440,000 | 440,000 | 3,520,000 | |
| | | 84C | 4,500,000 | 450,000 | 450,000 | 3,600,000 | |
| | | 59A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미선택 시 |
| | |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주방 트렌스포밍 월 앤 퍼니처 선택 시 |
| | | 59B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
| | | 84A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
| 거실/복도 고급화 | 거실 아트월 _ 세라믹타일 | 84B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
| | | 84C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 | 59A | 3,100,000 | 310,000 | 310,000 | 2,480,000 | |
| | | 59B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 | 84A | 3,900,000 | 390,000 | 390,000 | 3,120,000 | |
| | 거실아트월 + 거실아트월 맞은편+복도 _ 세라믹타일 | 84B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 | | 84C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 | 59A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 | | 59B | 6,700,000 | 670,000 | 670,000 | 5,360,000 | |
| | | 84A | 7,300,000 | 730,000 | 730,000 | 5,840,000 | |
| 조명 특화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조명 +픽체레일 일체형 간접등 +침실1 조명 | 84B | 7,100,000 | 710,000 | 710,000 | 5,680,000 | |
| | | 84C | 7,600,000 | 760,000 | 760,000 | 6,080,000 | |
| | | 59 전타입 | 4,960,000 | 496,000 | 496,000 | 3,968,000 | |
| 안전방충망 | 안전방충망 _ 거실, 침실1, 침실2 | 84 전타입 | 6,340,000 | 634,000 | 634,000 | 5,072,000 | |
| | | 59 전타입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 살균 청정 환기시스템 | 살균 청정 환기시스템 (거실/주방) - GREX | 전타입 | 1,650,000 | 165,000 | 165,000 | 1,320,000 | |
| | | | | | | | |
| H-BELL | H-BELL | 전타입 | 210,000 | 21,000 | 21,000 | 168,000 | 거실 1개소 |

※ 조명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및 픽체레일 일체형 조명은 천장 길이에 따라 조명이 분절라인이 적용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 시 기준 거실 및 안방 기본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안방 특화 조명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지하조명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조명 옵션 선택 시 현관 신발장 상부장에 SMPS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공간의 수납이 불가합니다. 또한, SMPS함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장고 상부장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8)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5621-6598-299750 | 현대건설(주)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

-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상기 계좌로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304074,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옵션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 0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자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 일반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터넷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을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특기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주체") 또는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주체")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용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점에 따라 옵션 계약 시점 등이 세대 내부 공사 기간 이후 진행 될 경우, 부득이하게 옵션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갑"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자체보상금이 발생하 |

| | |
|--------------|---|
| | <p>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단위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을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자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 2. 인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 3. 분양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경관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을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4.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본 시공시 세대 환기구는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크기, 디자인, 위치, 개소가 결정됩니다. 본 공사시 세대 마감기구류(수전, 도기, 액세서리, 비데, 온도조절스위치 등)의 제조사, 스펙,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5. 단지 및 주동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활용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학교, 인접건물,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산벽·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이어리어(D/A)·산책로·자전거보관소·문주·주차램프·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철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영향이 있을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학교,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학교, 공원, 정차공간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수 있습니다.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을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을"은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더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확장선택시의 세대 전면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사다리차의 하역통로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대지남측의 옹벽 위에 단지레벨보다 높게 학교, 도서관, 도로, 산지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105~109동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외부장식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소음, 진동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路虎/우수조/정화조/정화조 배기탑/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주민공동시설(106동~109동,112동) 및 근린생활시설(102동) 실외기 시설이 해당 지붕공간 및 인접한 상부 지붕공간에 설치될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미관, 냄새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02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109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GX룸, 실내 골프연습장,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112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및 111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용역원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돌출 상부, 부대시설 지붕 및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세대에서 전용 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의 점용은 불가합니다.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사지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계단·경사로 등으로 인해 보행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세부레벨계획(계단,경사로,옹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사지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저층부 일부 세대는 옹벽을 조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조망권 제한 및 일조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단지 경계부 및 내부에 설치되는 옹벽의 종류, 마감재, 디자인, 위치 및 노출범위 등은 실시공 시 확정됩니다. 일부 주동 외벽에 적용된 커튼월루 입면장식물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유리모듈,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면특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커튼월루으로 인하여 인근 일부 세대의 경우 빛반사 등에 따른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붕공간 일부에는 조경이 설치 될 예정이며, 조경이 설치되는 위치, 면적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식재가 계획되지 않아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는 관련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단지 내 연료전지 시설물(연도, 장비, 배관 등)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6.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상부는 각종 덕트,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충전기 수량, 위치 및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접근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삿짐 및 부피가 큰 짐은 지하주차장 유효높이 및 지하동출입구 개구부 유효폭에 따라 지하층 운반의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지하주차장은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의 차이가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다. 또한, 경차, 장애인주차, 확장형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단지 레벨차로 인하여 각 동별 접근 가능한 지하주차장 층수는 동별로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계약전 설계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2층 : 109동, 110동 - 지하3~5층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1동, 112동 지하3층주차장 출입구 인근 일부구간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6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구획(차단기, 벽 설치 등)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인지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트렌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 3층 |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7m |
| 지하 2, 4, 5층 |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3m |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일부는 별도의 차폐시설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맘스스테이션 등 건축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 시설물에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7. 부대 복리시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환기(주방용 포함) 및 정화조 배기시설(덕트, 장비 등)이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사이즈, 분할방식, 개폐여부 및 열린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설정서 등으로 같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접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 팬트리, 가구 내부 등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관/배선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 및 마감 디자인이 변경되며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カリ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 | |
|-------|--|
| | <p>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드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판에 가스인입용 구멍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니며, 가스 배관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 소화기 제어기 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세라믹타일 주방 벽체 및 상판 유상옵션 선택 시 메지가 추가 또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색상 및 패턴결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선택형에 따라 신발장 길이, 마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욕실 사위부스 선택형에 따라 비누탁의 길이, 조명위치, 도기류 설치 위치 등 옥조 선택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일반가구 마감 색상, 디테일, 하드웨어, 구성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발코니, 실외기실내 설치되는 입상, 바닥 배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입별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입별 안방 분합문 및 커튼박스 높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입별 주방 에어컨 설치 방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방과 발코니1 사이의 분합문의 상부에는 수벽이 형성되지 않으나, 59m'A타입 등 일부세대는 분합문 천장내로 스프링클러 배관이 통과하므로 분합문 상부로 수벽이 형성되어 분합문 높이가 축소되고, 커튼박스의 높이가 낮아지며 커튼레이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추후 커튼레이일 설치 등 커튼박스 상부 시공시 도면을 확인하여 배관에 간섭되지 않도록 관련 도면을 확인해야 한다. 부주의로 커튼박스 상부 배관 훼손시, 책임은 입주자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세대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시 비내력 벽체는 ALC블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기봉은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으며 각 동별 입구에 공동 국기봉이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방,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전자식스위치의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문 및 그외 철재/PD도어류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유상옵션품인 슬라이딩도어와 가구 및 벽체와의 간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도어는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너부위 타일마감면은 본공사 시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면대 사용시 물이 틸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바라면 세면대 사용 후 가구 등 마감재에 묻어있는 물 닦기 등 입주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면대 아래 가구 내부에는 세면기 배수(트랩 등), 급배수 배관/밸브, 점검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됩니다. 발코니에는 렌지후드용 FAN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급기 장치(전동 디퓨저)와 렌지후드용 FAN은 H 사일런트후드를 이해하기 돋기 위한 설치된 샘플품이며 본 시공시 제조사, 스펙(규격, 디자인 등)이 확정됩니다. 발코니2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 9. 창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m'A 다용도실(발코니2)에는 0.5m'미만의 작은창이 설치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세대의 유리난간 일체형 외부창호는 난간이 설치된 창호만 개폐됩니다.(난간 미설치 창호 개폐 불가) 공동주택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 (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 |
|--------------|---|
| 10. 공용기계전기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관조명, 지상 기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또는 계약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집광판,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된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훌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시멘트 물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다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지상층 및 주동 지붕층에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반드시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 계획된 부대시설은 환기 및 채광이 제한적이며, 실내습도 등 사용환경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4mA, 84mB, 84mC 타입은 기본형/변화형 계획에 따라 발코니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확장 시 침실2,3의 크기가 동별/층별 상이하므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기본형/변화형은 전용, 공급, 계약면적은 모두 동일함.) |
| 11. 세대기계전기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창고는 지하에 설치되며 세대별 세대창고 위치는 임의 지정하여 계획 및 시공예정이므로, 세대창고 접근 동선 및 동선길이는 세대별로 상이합니다. 아파트 돌출부 지붕,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배수드레인, 물빼기구멍(입흘) 및 선홀통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주동의 평면 및 입면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출부 지붕 배수드레인이 하부세대 천정 내 설치 될 수 있고, 이로인한 배수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우수 등의 배관이 천장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통합 또는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냉매배관 총 2개소가 기본 제공되며, 안방 벽걸이형의 경우 입주자가 액자형 에어컨 설치 시, L자형 배관커버 및 배수펌프 필요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드레인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획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획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하이오토(H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토(H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토 연동된 IoT 가전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방기능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됨)
- 하이오토(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과 세대통신단자함이 개별 또는 통합형으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조 출입기(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원패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작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되며, 스마트 주방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여야 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스마트 거치대가 설치 될 경우 후면에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한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텐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 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황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전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화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
- H 사일런트후드 적용으로 배기팬이 다용도실, 세탁실 천장 등에 설치되며 배기를 위한 덕트가 노출 시공 된다. 또한 설치 위치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살균청정환기시스템의 장비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디자인, 위치는 견본주택 대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안내

힐스테이트 등촌역 견본주택



■ 위치안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60

■ 운영기간 : 2024.11.29(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PC,모바일)

<https://hillstate.co.kr/s/deungchon>

분양문의

■ 힐스테이트 등촌역 : ☎ 02-2652-3660 (10:00 ~ 1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